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합109107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변론 종결 2023. 3. 22.(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23. 4. 12.(피고 B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3. 5. 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9,55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6. 3. 31. 취임하여 2020. 12. 8.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대출 등

1) 원고는 2018. 4. 23.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제1, 2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2018. 04. 23.	2031. 04. 22.	981,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28. 04. 21.	1,026,000,000원	
계	금		2,007,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아래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1. 9. 27.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상환범위, 변제 등의 총당순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비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③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도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음"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음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변제 등의 총당순서)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로 총당하기로 합니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상환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총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신보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신보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신보가 변제에 총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상환자가 제3항의 지정을 아니 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 순서 등을 고려하여 신보가 변재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C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18. 4. 27.

1,090,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2018. 4. 26. 1,140,000,000원(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합계 2,2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5)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C은행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접수 제37025호로 경료한 채권최고액

1,308,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C은행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및 ② 같은 날 같은 등기와 접수 제37026호로 경료한 채권최고액

1,368,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C은행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1)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가압류, 임의경매신청 등을 하여, C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9. 27. 아래와 같이 C은행에 합계 800,690,14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일부금으로 4,489,708원을 상환 받았다.

제1약정	제1보증	2021. 09. 27.	285,585,609원	4,489,708원	281,095,901원
제2보증	515,104,532원	-	515,104,532원		
제2약정	합	금	800,690,141원	4,489,708원	796,200,433원

2) 원고는 2021. 9. 27. C은행과 제1약정 대위변제액 285,585,609원 상당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받고, 제2약정 대위변제액 515,104,532원 상당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1.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 2 근저당권의 각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결과 등

1) 원고는 2022. 8.경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잔금 채권을 양수받은 D 유한회사와 제1, 2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①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312,417,323원[= 원금 281,095,901원 + 손해금 20,517,134원, 대지급금 10,804,288원(미지급 변호사 보수료 1,237,500원 포함)], ②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552,700,106원(= 원금 515,104,532원 + 손해금 37,595,574원), 합계 865,117,429원을 배당받기로 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은 2022. 8. 25. 소외 채권자들이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에게 ① 3순위로 301,613,035원(= 채권 원금 281,095,901원 + 이자 20,517,134원), ② 4순위로 552,700,106원(= 채권 원금 515,104,532원 + 이자 37,595,574원) 합계 854,313,141원(= 위 ① 배당액 + ② 배당액)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C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800,690,141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285,585,609원 + 제2 약정 대위변제금 515,104,532원)을 대위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이하 위 각 약정 대위변제금에 대응하여 번호순대로 '제O 약정 구상금'이라고 한다)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 중 제1 약정 구상금 중 4,489,708원을 상환하여, 구상금 원금 잔액 합계 796,200,433원(= 제1 약정 구상금 원금 잔액 281,095,901원 + 제2 약정 구상금 원금 515,104,532원)이 남게 되며, 이에 더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손해금, 대지급금도 추가로 발생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854,313,141원을 배당받았고, 다시 위 배당금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순서대로 구상금 채권 잔액에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중 확정손해금 9,549,559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549,5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채무는 피고 회사의 전 사내이사였던 피고 B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이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 피고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다¹⁾).

2) 피고 B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구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거나 없다(이하 번호순대로 '피고 B의 제○ 주장'이라고 한다).

① 배당표상 원고가 3순위로 배당받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33,834,151원이므로, 원고가 이에 기하여 배당받은 301,613,035원을 제외하고도 132,221,116원의 담보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담보 여유분을 상실시켰는바, 피고 B의 구상금 지급의무는 원고가 상실시킨 담보 여유분 가치만큼 면책된다.

②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제1 약정 구상금 원금 잔액 281,095,901원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2. 8. 25.까지의 연 8% 비율로 계산한 이자, 즉 손해금으로 20,517,134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위와 같이 이미 배당받은 손해금을 이중으로 청구하였다.

③ 원고가 배당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지급금은 이미 회수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였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급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였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급금 중 부동산가압류 비용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대부분을 취하하였고,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는 점에서, 소송비용 부분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미리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저당권이전비용 부분은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의경매가 신청된 후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포기 내지 묵시적 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8. 4. 2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8. 4.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C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보증 등을 담보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에 원고가 2021. 9. 27. C은행에 합계 800,690,14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가압류 등 명목으로 9,566,788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9. 27. 피고 회사로부터 4,489,708원을 상환 받은 사실, 같은 날 C은행으로부터 제1, 2 근저당권의 각 일부를 이전 받고, 피고 회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잔금 채권을 양수받은 D 유한회사와 배당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2022. 8. 25. 합계 854,313,141원을 배당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3)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살피건대, 배당일인 2022. 8. 25.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합계 863,879,929원 [= 제1, 2 약정 구상금 원금 잔액 796,200,433원(제1 약정 구상금 원금 잔액 281,095,901원 + 제2 약정 구상금 원금 515,104,532원) + 확정손해금 58,112,708원(제1 약정 확정손해금 20,517,134원 + 제2 약정 확정손해금 37,595,574원) + 대지급금 9,566,788원]이고, 위 배당금 854,313,141원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 구상금 채권 중 ① 대지급금 9,566,788원, ② 보증채무이행금(즉, 대위변제 원금 잔액) 796,200,433원, ③ 확정손해금 중 일부금 48,545,920원(= 제1 약정 확정손해금 중 일부금 10,950,346원 + 제2 약정 확정손해금 37,595,574원)2) 에 순차적으로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제1 약정 확정손해금 9,549,559원(제1 약정 대위변제금 잔액 281,095,901원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일부 확정손해금이 변제충당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22. 3. 24.부터 위 2022. 8. 25.까지(155일간)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이 남게 된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549,5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등의 계약당사자가 모두 피고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제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담보 여유분을 상실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제1, 2 대위변제금 전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원고가 대위한 C은행의 채권 범위 내에서 배당일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 2 대위변제금 원리금 전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B의 구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제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확정손해금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배당표에 따라 제1 약정 구상금 원금 잔액 281,095,901원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2. 8. 25.까지의 연 8% 비율로 계산한 이자, 즉 손해금으로 20,517,134원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일단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지급금, 보증채무이행금, 일부 확정손해금에 순차적으로 변제충당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변제충당 후 남은 확정손해금을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제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달리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이전 이미 대지급금을 회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 B의 제②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대지급금을 충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B의 제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급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상환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원고는 C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1, 2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 회사의 사해행위 등을 방지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비록 이 사건 본안소송 단계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나, 보전처분 신청 당시 원고의 권리 보전과 명백히 무관하였음에도 이를 신청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결국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권리보전과 명백히 무관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액을 감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배당금 수령 및 변제충당이라는 사후적 사정이 반영되었을 뿐인 점, 나아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그 청구인용 가능성은 소송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자의 자력상태와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점, 근저당권이전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배당요구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포기 내지 묵시적 면제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이전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배당요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권원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결국 이에 관한 배당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출한 부동산가압류 비용 등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상환범위로 정한 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나광윤

판사김명수

별지

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F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2023. 3. 20.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소 취하 이전에 제출한 2022. 11. 17.자 답변서를 기초로 정리한 것으로, 위 답변서상 피고 회사는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 회사의 위 답변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금액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존재하므로 일단 부인하는 것으로 본다.

2) 위①, ②의 변제에 총당되고 남은 배당금은 ③- 2018. 4. 26. 실행된 제2 대출 관련한 제2 약정 대위변제금 515,104,5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27.부터 배당일인 2022. 8. 25.까지(333일)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 37,595,574원에 우선 총당되고, 나머지가 ③- 2018. 4. 27. 실행된 제1 대출 관련한 제1 약정 대위변제금 잔액 281,095,901원(= 전체 제1 약정 대위변제금 285,585,609원 - 피고 회사의 일부 상환금 4,489,708원)에 대하여 위 2021. 9. 27.부터 배당금으로 변제총당된 날인 2022. 3. 23.까지(178일)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 10,966,590원과 ③- 위 4,489,708원에 대하여 2021. 9. 27.(1일)분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 984원을 더한 10,967,574원 중 10,950,346원(차액인 17,228원은 원고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체 손실로 처리하고 나머지만 구하고 있다)에 순차적으로 총당된다.